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 명시〉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998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 명시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9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24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2.12.27.)이 이루어진 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해양수산부문(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제해양법,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
② ~ ④ (생략)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를 명시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 이와 관련 현재 해양수산부의 인력양성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개정안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해양법,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 외에도 해양산업,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다양한 해양수산부문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해양수산부 인력양성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비고
해양법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해양법 해양영토 토론회	개정안 명시
해양수산자원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해양과학기술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 해양한국 발전 프로그램(씨그랜트)	
해양수산업	수산연구인력 연구지원, 수산계 학교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기술지원, 어업인 역량강화, 수산물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수산식품 인력양성, 수산생물진료업 종사자 연수교육, 귀어학교 개설	
해양산업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해운항만물류	청년해기인력공급기반강화,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해운항만산업 재취업 지원, 해운물류 안전교육 인력양성,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선박안전 관리자 자격제도 운영	

□ 또한, 현행법의 법 문언상 이러한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은 국제 해양법,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 수산과 관련된 전문인력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분야를 특별히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제해양법 분야의 경우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이후 바다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독도 영토주권·동해 표기 문제 등 국제 해양문제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법률에 명시한 바 있음.¹⁾

문 의 처
02)6788-5418

1) 법률 제19145호, 2022.12.27.

첨부 1

해양수산부 인력양성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법적근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해양법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국제해양법 전공자 대상 연구비, 국제기구 인턴십, 해외아카데미 참가 등 지원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제31조	420	420	420
	해양법 해양영토 토론대회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개최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제34조	100	100	100
해양수산업자원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해양바이오 기업 재직자의 실무 역량 배양을 위해 해양 소재에 특화된 소재 분리·정제, 기능성분 분석, 장비 운용 등 이론·실습 교육	해양수산업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50	250	-
해양과학기술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	국내외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극지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등록금, 연구활동비, 생활지원금)으로 지원	극지활동 진흥법 제9조	84	54	95
	해양한국 발전 프로그램(씨그랜트)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해양수산업 현안을 연구·해결하고 석박사급 전문연구 인력 양성	해양수산업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의2	2,428	3,524	1,700
해양산업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및 국제인증 과정 교육, 대학·대학원 대상 아이디어 경진대회 실시, 특성화고 대상 자격취득 교육 지원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제31조	720	997	1,094
수산업	수산업연구인력 연구지원	미래주도형 수산자원관리, 친환경 양식기술, 고부가가치 수산 식품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ICT 융·복합 전문영역과 수산학적 소양을 겸비한 현장밀착형 전문 인재 양성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4조, 제15조, 제30조, 해양수산업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4,776	3,000	2,000
	수산업 학교지원	수산업 고교 학생들의 취업·창업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지원, 지역 수산업 인프라 활용 수산업 고교 학생대상 교육지원 추진 등	농어업인 삶의 질 제24조	3,832	9,324	8,948
	일자리 창출 및 기술지원	귀어자, 수산업 입문자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멘토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등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81	1,959	2,320

구 분	사업명	주요내용	법적근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10조, 제11조			
	어업인 역량 강화	수산업경영인, 어업인 단체, 여성어업 인 등 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지원	수산업·어촌 발 전기본법 제16 조, 제17조, 제 18조, 제22조	992	992	923
	수산물 유통 종사자 역량 강화	산지경매사, 수산물 도매시장 종사 자 유통 역량 강화 교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76조	100	100	440
	수산식품 인력양성	영세한 수산가공기업의 핵심역량 고도 화를 위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을 통한 인력 양성	수산식품산업 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 률 제6조	100	100	89
	수산생물진료 업 종사자 연 수교육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향상, 진료의 전 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교육 실 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 의18	44	44	44
	귀어학교 개설	귀어인 양성을 위해 어업 및 양식 업 등 기술교육 시설 마련	귀농어·귀촌 활 성화 및 지원 에 관한법률 제7조	500	500	-
해 운 항 만 물 류	청년해기인 력공급기반 강화	산·학 연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해기 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맞춤형 교육 후 취업연계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제6조	400	360	360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선박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핵심역 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후 수료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제13조	200	190	190
	해운항만물 류 전문인력 양성	해운·항만물류분야 종사자, 대학(원) 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지 식 교육 및 인턴십 운영을 통해 현 장·실무 중심의 교육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1,516	1,479	1,452
	실무형 해상 물류 일자리 지원	타 분야 인재를 대상으로 해운항만 물류, ICT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 유도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1,000	1,000	900
	해운항만산 업 재취업 지 원	해운항만산업 인력의 맞춤형 재교 육과 재취업 지원, 재취업 지원 정 보 플랫폼 구축 등으로 고용 안정 화 도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3 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2,050	2,050	2,050

구 분	사업명	주요내용	법적근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해운물류 안전교육 인력양성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항만노동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국내외 확산시키기 위해 각국 항만운영사 핵심관리자를 ILO 교육기관에 초청하여 교육 실시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100	100	100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자동화항만 도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기존 항만인력을 신규 자동화항만 운영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직자 신규직무교육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320	296	-
	선박안전관리 사 자격제도 운영	선박의 대형화·첨단화 등에 대비하고 선박 안전관리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 검증·관리체계를 도입, 해사분야 안전관리 인재양성 추진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24.1.5. 시행)	-	750	100